

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(제104조의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사업 규모, 사업 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 내용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	법 제48조의2제1항제1호	지정 취소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1) 교육과목,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2)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3)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)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	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	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

<p>지 않은 경우</p> <p>나) 이착륙 시설(훈련비행장)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</p> <p>4)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, 교육생 정원,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</p>		<p>업무정지 5일</p> <p>업무정지 3일</p>
<p>다.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1)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</p> <p>2)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</p> <p>3)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4)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</p>	<p>업무정지 5일</p> <p>업무정지 5일</p> <p>업무정지 5일</p> <p>업무정지 3일</p>
<p>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</p>	<p>업무정지 3일</p>
<p>마.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8조의2제1항제5호</p>	<p>업무정지 10일</p>
<p>바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 <p>1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</p> <p>2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</p>	<p>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</p>	<p>업무정지 180일</p> <p>업무정지 150일</p>

<p>3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</p> <p>4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</p> <p>5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</p> <p>6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</p> <p>7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</p> <p>8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 경우</p> <p>9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</p> <p>10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11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12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13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14)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</p>		<p>업무정지 120일</p> <p>업무정지 90일</p> <p>업무정지 60일</p> <p>업무정지 30일</p> <p>업무정지 30일</p> <p>업무정지 20일</p> <p>업무정지 15일</p> <p>업무정지 30일</p> <p>업무정지 25일</p> <p>업무정지 20일</p> <p>업무정지 15일</p> <p>업무정지 10일</p>
<p>사.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1)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</p> <p>3)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</p>	<p>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</p>	<p>업무정지 10일</p> <p>업무정지 10일</p> <p>업무정지</p>

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)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		10일 업무정지 10일
아.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	법 제48조의2제1항제8호	지정 취소

비고

1.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2.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. 다만,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위 표의 바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,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